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성 명	(서명또는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60%경감대상자 ☐ 4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시설명	상동노인복지센터	시설종류	재가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시설장 성명	유 동 선 (서명또는인)	연락처	010-3569-1282
	주 소	경남 밀양시 상동로 583		
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 명	(서명또는인)	관 계	‘이용자’의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 ④ ‘관공서(국가)의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은 근무 없는 날로 한다
-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자’는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 ⑦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단 요일과 시간은 다수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자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월 이용료 납부
 -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7. 기타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 ③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2. ‘이용자’는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 4. ‘이용자’에대한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 ①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는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 ③ ‘이용자’는 이용료를 (현금)으로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공자’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 ① ‘제공자’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시설장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즉시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공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방문요양급여비용및본인부담기준)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급여비용금액(원))

구 분	26년수가	25년수가	26년본인 부담금	25년본 인부담 금	구 분	26년수가	25년수가	26년본 인부담 금	25년
30분 이상	17,450	16,940	2,618	2,541	150분 이상	50,640	49,160	7,596	7,374
60분 이상	25,320	24,580	3,798	3,687	180분 이상	57,020	55,350	8,553	8,303
90분 이상	34,120	33,120	5,118	4,968	210분 이상	63,530	61,670	9,530	9,251
120분 이상	43,430	42,160	6,515	6,324	240분 이상	70,080	68,030	10,512	10,205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6년 1월1일 실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6년 한도액	2,529,0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1회210분,240분 폐지(단1등급,2등급은 유지) -방문요양 동시순차 제공기준완화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

-동일시간 중복급여제공(방문요양+간호, 방문목욕+간호).늦게 개시한 급여60분 범위내

인정기준→삭제 (-.원거리교통비→ 24시간 방문요양 할 경우 추가)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경감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경감6%

< 개편 시 본인부담률>’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상동노인복지센터 시설장 (서명또는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수급자 : (서명또는인)

대리인 또는 보호자 : (서명또는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급자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장기요양급여관련 정보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급자와의 관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장기요양급여 관련 본인확인 등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이용료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정보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향상 등에 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4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기간 동안 이용되며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한다.

상기 본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이용자(보호자): (서명또는(인))

상동노인복지센터장 귀하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일	. .
	작성자	유동선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키	cm	생년월일	. .
인정번호/등급	/등급	체중	kg	성별/연령	남 / 81세

1. 신체상태(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3. 인지상태(정신상태, 감정)

4. 가족 및 환경 상태

※ 표기 : □에 V표 _____에 기재

구분	확인		
주수발자	☐ 유 ☐ 무	관계	
자녀수	명		
동거인	☐ 독거 ☐ 부부 ☐ 부모 ☐ 자녀 ☐ 손자녀 ☐ 친척 ☐ 친구·이웃		

5. 수급자 및 보호자 개별 욕구

※ 표기 : 서술형 작성

6. 총평

※ 표기 : 서술형 작성

방문요양 , 방문목욕 서비스제공